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권상실의 선고 및 후견인 변경심판의 청구의무자 확대〉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37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9.
3.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 검사에게만 주어진 「민법」 제924조¹⁾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²⁾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의무를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u>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 ----- ----- <u>검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검사등”이라고 한다)은</u>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② <u>검사가</u>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검사</u>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u>검사는</u>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u>검사등이</u>----- ----- ----- ----- ----- -----<u>검사등</u>----- ----- -----<u>검사등은</u>----- ----- ----- ----- ----- -----. ③ (현행과 같음)

1)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의 청구의무자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³⁾를 범하거나 아동학대상습범(제6조)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사건 피해아동의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중하거나 상습인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법률적으로 신속히 분리하여 학대재발 방지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현재는 이러한 친권상실 등의 청구 의무를 검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가 피해아동과 관련된 자⁵⁾에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법체계를 고려하여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으로도 검사 외에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친권자·후견인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하여 자녀·피후견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⁶⁾

5)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6)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9조가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상해죄·상습범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과정에서 친권 등에 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 법에 따른 의무적 친권상실 등의 청구는 중상해죄·상습범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검사를 경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친권 상실 등의 청구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오히려 중복 청구와 같은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민법」상 친권 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에게 청구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민법」상 친권 상실의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제924조제1항), 후견인 변경의 청구권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제940조).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의무자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민법」상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다수

포함되게 되는 결과가 됨.

- 또한,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는 검사등⁷⁾이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등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법」상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히려 청구권자가 아닌 자에게 청구를 요청하게 됨.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해당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권한 행사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검사가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및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점과 이 법 제9조는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의무화한 규정인바 안 제9조제2항은 「민법」상 심판청구권자인 지자체장이 청구권이 없는 자에게 심판 청구 요청을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검사에게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청구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검사의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판단 등에 준하는 면밀한 검토 없이 청구가 오·남용되어 친권

7) 검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앞서 열거된 시설의 장과 중복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